

# 상반기 소방법 위반 1107명 검송치

## 소방청, 상반기 소방특사경 단속 결과 발표… 소방관 폭행·성희롱 89건

올해 상반기(1~6월) 소방법령을 어겼다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위반자가 1107명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성희롱을 한 사건도 89건이나 발생했다.

소방청은 2021년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단속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 7개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상반기에 864건의 법을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위반이 있을 땐 1건으로 통합 집계한 것으로, 1년 전(745건)보다 16.0%(119건) 증가했다.

이 중 610건 1107명(개인 762명, 법인

345개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년 전(601건 1007명)보다 사건 수로는 1.5%, 피의자 수로는 9.9% 각각 늘었다.

법률 유형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소방시설법' (282건), '소방시설공사사업법' (206건), '소방기본법' (73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4건) 순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사례는 없었다.

특히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4.9%(73건), 32.1%(50건)나 증가했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

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98건 발생했다. 전년(107건)보다는 8.4%(9건) 줄었다.

소방관 폭행이 88건(89.8%)으로 가장 많았다. 기물 파손과 진로 방해는 각 3건(3.1%)씩 발생했고, 성희롱·강제추행도 1건(1.0%) 있었다. 나머지 3건은 기타로 분류된 사례다.

피의자의 소방활동 방해 당시 상태로는 술에 취한 경우가 86건(87.7%), 정신 이상이 4건(4.1%)으로 나타났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8건(8.2%) 있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을 불법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엔택트 천사마라톤대회 기부금 전달 5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기념 '엔택트 천사마라톤대회' 기부금 전달식에 송헌진 도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권오진 전북은행 부행장, 류평 KT 본부장, 문중선 이태미스터스 대회협력본부장이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 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 전북도,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양성 교육' 총 2개 과정 운영 취업자 과정 29일까지·전문가 과정 9월 30일까지 교육 접수

전북도가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재생에너지산업 인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취업자 및 전문가 총 2개 과정으로 운영하는 2021년 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자 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 전문가 과정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북 부안에 있는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소장 김중일)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접수는 취업자 과정 8월 29일까지, 전문가 과정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교육과정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시설·안전·행정관리, 드론·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취업자 과정은 취업·산업전환 희망자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전문가 과정은 육상·수상·해상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심화교육 등으로 운영한다.

교육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직자, 경력자, 취업 희망자 및 예정자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각 과정당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누리집

(http://saemangum-job.or.kr)과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063-580-1522)를 활용하면 된다.

도는 재생에너지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키우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지원 환경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 5월부터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1,200명의 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나윤화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도내 취업 및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공공형어린이집 40개소 재선정

도내 총 89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운영비 등 지원

전북도가 그동안 운영 중인 40개 공공형어린이집을 재선정, 공공육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2,200여 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도내에는 이번에 재선정된 40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89개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우수한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에 따라 3년마다 재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재선정은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41개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중 40개 어린이집이 심사기준을 통과함으로써 전북도의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됐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달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형어린이집 18개소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모집공고 등 선정 절차를 거쳐 앞으로 110여 개 규모로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1기에 최초 선정됐던 어린이집이 다시 재선정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줬다"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안전'

도내 골프장 토양과 수질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2021년 상반기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규제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27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에 대해 조사했다.

일부 골프장 잔디에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일반 농약 중 살충제 테부코나졸 등 6종만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중 골프장 토양과 수질 검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이달 말 청년종합대책 발표… ‘N포세대’ 대신 희망·성공”

###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기본법 시행 1년 기념… “일자리·주거 등 포괄대책”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달 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구체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장관서비스(SNS)에 공개한 청년기본법 시행 1년 기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5년 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청년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가 지난해 9월 출범했고, 같은해 12월 향후 5년 계획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 행정 최초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합의도록'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아직 부족함이 많다. 이제 막 뿌리를 내렸으니 잘 가꾸어 줘야 되고 튼튼하고 줄기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청년' 앞에는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는 날까지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완주군 공고 제2021-1179호

## 행단천 재해복구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행단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조, 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출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2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공 사 개 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편입토지	출 입	비고
행단천 재해복구 사업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일대	2021. 8. ~ 2022. 12.	s하안방비 L+L 23km	59필지	반입/반출	연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구분	소재지
토지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59필지) 832-1, 832-2, 833-1, 835-1, 838-1, 838-2, 839-1, 839-2, 841, 842-1, 842-2, 843-1, 843-2, 843-3, 844-1, 844-2, 858-1, 858-2, 859-1, 859-2, 899-1, 899-2, 901-1, 904-1, 905-1, 905-2, 905-3, 905-4, 914-1, 914-2, 915-1, 917-1, 917-2, 920-1, 920-2, 920-3, 921-1, 921-2, 921-3, 921-4, 922, 923, 924, 926, 927, 928-1, 928-2, 928-3, 933-1, 934-1, 935, 936-1, 1108, 1108-14, 1108-16, 1124, 1125, 9222
-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08. 05.(목) ~ 2021. 08. 19(목) (15일간)
  - 열람장소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주 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전 화 : 063-290-2934 / 팩스 : 063-290-2064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 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해 이의신청일까지 재난안전과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 : 열람기간 내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보상시기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보(2021. 08중순)
-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및 방법

### 전주시 공고 제2021-1973호

## 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번호	기량	면적(m <sup>2</sup> )	변경부	비고
변경	합12	10,933.9	2,645.0	2,282.9	필지의 분할·합병 허용
변경	이원1	21,029.0	2,645.0	23,674.0	필지의 분할·합병 불가

1. 지구단위계획결정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분제계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7)  
나. 관련도시 : 개척생태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eiev77@kore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상기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도시/공공)에 게시하였으며, 그림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전주시 장